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23-92 관련

제안년월일 : 2023. 6. 13.
제 안 자 : 복지도시위원회

1. 수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따른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추가하여 사용료 감면·할인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제54조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따른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나. 제54조제3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

사용료 등 감면 (제54조 관련)

대 상	감면 비율	비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0%	

대 상	감면 비율	비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따른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4자녀이상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0%	
-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3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30%	
-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2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4조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따른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제54조제3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

사용료 등 감면 (제54조 관련)

대 상	감면 비율	비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따른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50%	

대 상	감면 비율	비고
-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4자녀이상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0%	
-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3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30%	
-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2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1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51조(시설 사용허가)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리 또는 정치·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2. 사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1조(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5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구청장은 제 5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중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2조(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53조(사용료) ① 제51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 및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제53조(개정안과 같음)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54조(사용료 등의 감면·할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54조(사용료 등의 감면·할인)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1. ~ 3. (개정안과 같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따른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5. ~ 11. (개정안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7.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9.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 10.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신 설>	제5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예정일부터 사용취소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취소한 경우 대관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취소한 경우에는 위	제55조(개정안과 같음)

	약금 10%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 2.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센터의 특별한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② 수강료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 정지된 경우 2. 운영자가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3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51조 (생 략)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별표1,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56조 (현행 제51조와 같음)

<삭 제>

<별표1>

사용료 징수 범위(제53조 관련)

구 분	단 위	기준금액	부 과 기 준
세미나실	1시간	25,000원	○ 1시간 이내는 1시간으로 계산 ○ 1시간 이내 초과 시는 다음시간 이용료까지 가산함 ○ 토, 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일반강의실 I	1시간	20,000원	
일반강의실 II	1시간	15,000원	
일반강의실 III	1시간	10,000원	

<별표2> 사용료 등 감면
(제54조 관련)

대 상	감면비율	비 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면제	

제56조(개정안과 같음)

<삭 제>(개정안과 같음)

<별표1> (개정안과 같음)

<별표2> 사용료 등 감면
(제54조 관련)

대 상	감면비율	비 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면제	

대 상	감면 비율	비 고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4자녀이상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50%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0%	
-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3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30%	
-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2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10%	

대 상	감면 비율	비 고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따른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4자녀이상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50%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0%	
-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3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30%	
-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2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10%	

<별표3> 수강료 반환기준
(제55조제2항 관련)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반환사유 발생일</th><th>반환금액</th></tr>
<tr><td colspan="2">제5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따른 반환사유의 경우</td><td>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td><td>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td></tr>
<tr><td rowspan="5">제5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td><td rowspan="3">가.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td><td>수업시작 전</td><td>수강료 전액</td></tr>
<tr><td>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가기 전</td><td>수강료의 2/3 해당액</td></tr>
<tr><td>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가기 전</td><td>수강료의 1/2 해당액</td></tr>
<tr><td rowspan="2">나.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td><td>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td><td>반환하지 아니함</td></tr>
<tr><td>수업시작 전</td><td>수강료 전액</td></tr>
<tr><td colspan="2"></td><td>수업시작 후</td><td>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td></tr>
</table>

<별표3> (개정안과 같음)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신청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